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6, No. 140, pp.355-393
<https://doi.org/10.29212/mh.2026..140.355>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논문 4

19세기 말 경기 연안 방어체제의 강화와 花島鎮 운영

홍민유 | 경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연구원

- 목 차
1. 머리말
 2. 이양선의 서해안 침범과 인천방어영 승격
 3. 제물포 화도진 설치와 운영
 4. 인천 監理署의 부설과 화도진 혁파
 5. 맺음말

초 록 본고는 1879년부터 1894년까지 존속한 인천 화도진의 설치 경위와 운영 실태, 혁파 이후 자산 처리 과정을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기존 연구는 화도진의 설치 배경과 제도적 변천을 중심으로 다루었으나, 사료의 제한으로 인해 운영적 측면은 충분히 규명되지 못하였다. 이에 본고는 지구관청일기, 각사등록, 경기관초 등에 수록된 화도진 관련 관문과 첩보를 정리하여 화도진의 실제 운영 양상을 살펴보았다.

화도진은 서구 열강의 통상 요구와 조일수호조규 체결 이후 일본의 개항 압박이 누적된 결과, 1879년 인천 제물포에 신설되었다. 설치 초기에는 해안 감시와 이양선 대응이 핵심 기능이었으나, 1883년 인천 개항과 감리서 설치 이후 개항장 치안 유지, 전신선 관리 등도 담당하였다. 동시에 독진으로서 보유하였던 과세·사송 관할권은 감리서의 행정 권한과 충돌하였고, 1894년 군국기무처의 의안에 따라 혁파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화도진의 자산 처리는 혁파 이후 1905년까지 지속되었다.

본고는 화도진의 운영 실태와 감리서와의 마찰 양상을 구체적으로 실증함으로써, 개항기 개항장에 소재한 진보가 군사 거점에서 행정, 치안 기능이 복합된 공간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밝혔다는데 의의가 있다.

주제어: 화도진, 제물포, 개항기, 이양선, 서해안, 경기만, 감리서

1. 머리말

19세기 중반 이후 조선 정부는 이양선의 빈번한 출몰과 서구 열강 및 일본의 지속적인 통상 요구에 직면하였다. 특히 수도 한양과 가장 가까운 해로에 위치한 강화도 일대는 외세 침투의 주요 통로로 인식되었다. 조선 정부는 1866년(고종 3) 병인양요와 1871년 신미양요를 거치면서 인천을 경강으로 이어지는 해상 요충지로 인식하게 되었다.¹⁾ 이후 인천부의 방어 체계 강화 논의가 지속되었으나, 상시 감시, 방어를 전담하는 기구의 설치는 실현되지 못했다. 조선 정부는 이양선이 출몰할 때마다 임시로 병력을 파견하였다가, 철수하는 방식을 유지하였다.

조선 정부의 경기 연안 방어책은 1875년(고종 12) 운요호 사건과 이듬해 조일수호조규의 체결로 전환되었다. 운요호 사건으로 영종도가 함몰되자 인천을 방영으로 승격하고, 영종진을 이속하는 조치를 취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다. 조일수호조규 체결 이후 일본의 인천 개항 요구가 지속되는 가운데, 인천부사가 정부의 승인 없이 배를 빌려주어 외교사절이 사전 통보 없이 경강을 이용하여 한양에 도달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외교 문제로 비화하게 되었다.²⁾

이에 따라 인천의 방영 승격에 그치지 않고 진보를 신설해야 한다는 논의가 시작되었다. 1878년 영의정 이최응은 인천, 부평 일대가 강화에 비견되는 요충임을 강조하면서 무위소가 이미 수년간

1) 『고종실록』 권8, 고종 8년 4월 15일(갑술).

2) 『고종실록』 권13, 고종 13년 6월 9일(무술).

설치를 준비해왔다고 주장하였다.³⁾ 고종이 인천 진보 설치를 동의 하면서 어영대장 신정희가 감동으로 임명되었고, 가을부터 포대와 진사 축조에 착수하여, 부평에는 연희진, 인천에는 花島鎭이 설치 되었다.

화도진의 설치는 17~18세기 정립된 경기 연안 방어체제의 구조 적 변화로 살펴볼 수 있다. 강화도의 진무영과 교동도의 통어영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던 기존 방어체제는 강화도와 인근 해역을 방어 하는 것으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화도진의 설치는 이양선의 출몰 에 대응하기 위한 진보로 설치되었고, 월미도와 물치도 인근 해역 감시를 담당하였다.

개항기 인천 지역을 방어하기 위해 설치된 화도진에 관한 연구 는 인천 지역민의 구술을 바탕으로 연혁과 포대 및 전각 구조 등 을 조명하면서 시작되었다.⁴⁾ 또한 조일수호조규 체결 이후 인천 개항 교섭 과정과 그에 대응한 연안 방비책의 추진 과정을 살펴먼 서 군사적 요충지의 인식이 조성되었다.⁵⁾ 또한 화도진의 설치 배 경과 과정, 별장의 직위, 군영 소속의 변천 등 제도적인 분야의 시 계열적 분석과 사료의 축적이 이루어졌다.⁶⁾ 그러나 해당 연구들은 제도적 측면에서 화도진의 설치 배경과 과정을 주목하여 운영적인 측면이 미약하게 진행되어 진보의 설치 목적이나, 실질적인 운영 측면은 답보 상태이다.

따라서 본고는 기존의 제도적 연구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운영 방식을 살펴볼 수 있는 『지구관청일기』, 『친군별영등록』을 비롯한 등록, 일기류 그리고 『각사등록』에 수록된 인천 감리서, 화도진 관련 첩보, 관문 등을 통해 화도진의 설치 경위, 기능과 운영 실

3) 『고종실록』 권15, 고종 15년 8월 27일(갑진).

4) 최성연, 『개항과 양관역정』, 경기문화사, 1959.

5) 박광성, 「인천개항과 연안방비책에 대하여」, 『기전문화연구』 11, 1991.

6) 인천직할시, 「화도·연희진의 설치와 중심성 축조」, 『인천시사』, 1994.

태, 감리서 부설 이후 역할 변화 및 혁파 과정을 규명하고자 한다. 개항 이전 화도진이 인천 지역의 군사·행정을 담당하고, 감리서 부설 이후 역할이 축소되는 등의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인천과 경기 연안에 위치한 진보의 변화를 밝혀 19세기 말 조선 정부의 해방체제 강화의 일면을 밝히고자 한다.

2. 이양선의 서해안 침범과 인천방어영 승격

19세기 중반 이후 조선의 서해안에는 서구 열강의 군함과 상선이 잇따라 출몰하였다. 아편전쟁(1840~1842)을 전후로 영국·프랑스 군함의 탐측이 조직화되었다. 1816년(순조 16) 영국 해군의 측량과 1832년(순조 32) 로드 애트머스호의 통상 요구⁷⁾가 있었던 데 이어서 1840년대에는 영국 해군이 한반도 해도를 작성하는 단계에 이르렀다.⁸⁾ 조선 정부는 청 사행을 통해 서구 열강의 동향에 대해 간접적으로 파악하였을 뿐, 근본적인 방어체제 개편은 시도하지 않았다.⁹⁾ 1866년(고종 3) 병인양요로 강화도가 함락되고 외규장각 도서 등이 약탈되자, 조선 정부는 순무영을 설치하여 경기 해방의 지휘체제로 삼았고,¹⁰⁾ 한강 하구 일대의 방어 거점도 보강하였다.¹¹⁾ 이 시기 해방책을 주도한 신헌은 정약용의 민보론을 해

7) 민장원, 「19세기 해방책의 전개와 서해안 방어체제의 재편」,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25, 22~30쪽.

8) 민장원, 위의 논문, 2025, 36~55쪽.

9) 민장원, 위의 논문, 2025, 102~126쪽.

10) 연갑수, 「병인양요와 흥선대원군 정권의 대응 — 「순무영등록」을 중심으로」, 『군사』 33, 1997, 196~198쪽.

11) 수도권 및 강화도, 강화유수영 소속 병력의 방비책 강화는 연갑수, 「병인양요 이후 수도권 방비의 강화」, 『서울학연구』 8, 1997, 72~77쪽 참조.

도·해안 전역으로 확장하고, 魏源의 江防 개념을 수용하여 1867년 陳軍務疏를 통해 국방 개혁안을 제시하였다.¹²⁾ 이후 1874년 진무사로 부임한 뒤에는 초지진, 덕진진, 광성보 등에 저지대 포대를 신축하였다. 신헌은 기존 포대가 높은 언덕에 설치되어 전장식 화포의 효용성이 낮다는 한계를 인식하였고, 강면 직사가 가능한 낮은 지형에 포대를 신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¹³⁾

당시 한양과 인접한 인천의 연안에도 이양선이 출몰했다. 1868년(고종 5) 경기감사 이의익은 三帆異樣船이 영종 앞바다에 정박한 것을 보고하였다. 당시 영종과 인접한 인천, 남양, 부평, 안산 등 4개 읍에서도 동일한 보고가 올라왔다. 이는 당시에도 감영을 중심으로 구성된 행정체계와 정보망이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¹⁴⁾ 이에 따라 조선 정부는 병력을 파견하여 해당 읍의 방수를 실시하였으며, 이양선이 철수하면 해당 읍의 병력으로 방수하게 하였다.¹⁵⁾

1871년(고종 8) 신미양요는 인천의 전략적 위상을 한층 분명하게 각인시켰다. 미국 아시아 함대 사령관 로저스가 이끄는 함대 5척이 강화도 인근 해역을 침범하였다. 미 함대는 팔미도를 거쳐 인천부의 수심을 측량하였고 경강 진입을 시도하기도 하였다.¹⁶⁾ 이에 삼군부는 인천을 이양선이 정박하는 곳에서 곧바로 통하는 길목임을 명시하고 훈련도감 군사 1초와 수어영 별파진 50명을 인천부사에게 영부하도록 하였다.¹⁷⁾ 광성진이 함락되고 중군 어재연

12) 노영구, 「신헌의 국방론과 해안 포대 건설」, 『문헌과 해석』, 48, 2009, 173~178쪽.

13) 노영구, 앞의 논문, 181~183쪽.

14) 『고종실록』 권5, 고종 5년 4월 22일(경자).

15) 『고종실록』 권6, 고종 6년 3월 16일(무자).

16) 신미양요의 전개와 강화도 방어체계 변화에 대해서는 강석화, 「신미양요와 강화도 방어체계의 변화」, 『기전문화연구』 39-2, 2018 참조; 민장원, 앞의 논문, 199~210쪽.

17) 『고종실록』 권8, 고종 8년 4월 10일(기사); 고종 8년 4월 15일(갑술)

이 전사하는 격전을 치른 뒤, 영의정 김병학은 심도포랑미를 신설하여 상시 병력을 양성하고 인천부사를 내변지로 격하며 남양 대도호부의 목장을 진으로 전환하는 3개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고종은 이를 수용하였다.¹⁸⁾ 조선 정부는 인천부 무사의 포과를 시취하여 상시적 훈련 체계를 갖추고,¹⁹⁾ 각 읍진 포병의 조습을 포상하였다.²⁰⁾ 또한 새로 주조한 화포를 분송하는 등 후속 조치가 이어졌다.²¹⁾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병력 동원과 무기 정비에 그쳤을 뿐, 독자적인 진의 신설로는 이어지지 못하였다.

1875년(고종 12) 8월 일본 군함 운요호가 강화도 초지진을 공격하여 영종진을 함몰시켰다.²²⁾ 이에 따라 의정부는 인천부를 방어사영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건의하였다.²³⁾ 좌의정 이최응과 우의정 김병국 역시 그간의 방비 노력에도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을 통렬히 비판하며 인천 방영 승격과 연해 단속 강화를 촉구하였다.²⁴⁾ 이에 영종진을 인천 방영으로 이속하는 방안이 확정되었으나,²⁵⁾ 영종진의 운영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온 까닭에 복설과 해우 개축이 결정되었다.²⁶⁾

이러한 방어체제 개편은 이양선이 경기만 일대에 나타난 이후 가장 큰 개편이었으나, 경강으로 이어지는 해상 통로를 상시 감시·통제할 진영의 설치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이듬해 조일수호조규 체결 교섭 과정에서 일본 측이 인천·부평 하륙 가능성을 암시

18) 『고종실록』 권8, 고종 8년 5월 25일(갑인).

19) 『고종실록』 권8, 고종 8년 8월 22일(경진).

20) 『고종실록』 권10, 고종 10년 9월 27일(임신).

21) 『고종실록』 권11, 고종 11년 7월 17일(정사).

22) 운요호 사건의 경위와 영종진 함몰, 경기 해방 거점의 변화에 대해서는 민장원, 앞의 논문, 231~237쪽 참조.

23) 『고종실록』 권12, 고종 12년 8월 27일(신묘).

24) 『고종실록』 권12, 고종 12년 8월 29일(계사).

25) 『고종실록』 권12, 고종 12년 9월 7일(경자).

26) 『고종실록』 권12, 고종 12년 9월 30일(계해).

하였다.²⁷⁾ 또한, 조약 체결 직후인 6월에는 인천부사가 정부의 승인 없이 배를 빌려주었고, 일본 사절이 사전 통보 없이 경강에 도달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²⁸⁾

일본은 하나부사 요시모토[花房義質]를 대리공사로 부임시켜 서해안 일대의 측량을 주도하며 인천을 추가 개항지로 지정하였다. 일본은 조일수호조규 체결 이후 부산항을 제외한 개항장 2개소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1878년에는 일본 군함 아마기함[天城艦]이 충청도 해안을 탐사하였고, 1879년 윤3월에는 하나부사 요시모토가 재차 파견되어 충청·전라·경기 해안을 측량한 끝에 인천부의 제물포를 최적의 개항장으로 지목하였다.²⁹⁾

1878년(고종 15) 8월 27일 차대에서 영의정 이최응은 인천, 부평 등지가 강화에 견주어 오히려 더 중요한 요충이며, 무위소에서 이미 수년간 설치를 경략해 왔다고 밝혔다.³⁰⁾ 인천부 일대에 진영을 신설하는 것은 즉흥적으로 결정된 사안이 아닌, 수년에 걸쳐 준비된 결과물이었다. 고종은 즉각 동의하면서 어영대장 신정희에게 진영 신설에 대한 감동을 맡겼다. 어영대장 신정희의 부친은 강화진무사로 재직하며 강화 연안 포대를 설치한 경험을 갖고 있던 신헌이었다. 신정희는 그 경험을 인천·부평 방비 사업에도 적용할 수 있는 책임자였다.³¹⁾

고종은 신정희에게 강화 돈대 사업은 어영대장의 부친이 진무사로 있을 때 잘 처리한 것이니 어영대장 또한 이 일을 잘 해낼 것이라고 당부하면서, 신헌의 선례를 직접 거론하였다.³²⁾ 10월 5일 차

27) 『고종실록』 권13, 고종 13년 1월 21일(계축).

28) 『고종실록』 권13, 고종 13년 6월 9일(무술).

29) 박광성, 「인천개항과 연안방비책에 대하여」, 『기전문화연구』 11, 1991, 337~339쪽.

30) 『고종실록』 권15, 고종 15년 8월 27일(갑진).

31) 노영구, 앞의 논문, 184쪽.

32) 『고종실록』 권15, 고종 15년 8월 27일(갑진).

대에서 신정희는 이미 제물진에서 포대 축조를 시작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고종은 노력과 비용, 더디고 빠름을 따지지 말고 오로지 견고하고 치밀하게 하는 것에만 힘쓸 것을 명하였다.³³⁾

1879년 윤3월 13일 의정부는 인천부사 임백현의 보고에 따라, 인천, 부평, 시흥, 안산, 과천, 김포, 양천 등 7개 읍의 포랑미를 직접 획급하는 방안을 확정하였다.³⁴⁾ 인천부에 진영을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한 재원을 먼저 정비해둔 것이었다. 같은 해 4월 일본 측에 의한 신설 진영 포대 건설 방해가 이루어졌다. 하나부사 요시모토 일행이 제물포 인근에 도달하고, 조선 정부가 포대 공사 중이던 경내를 2간이나 침범하여 임시 가옥을 조성하였다. 인천부사 임백현은 무슨 일이든 조정의 처분이 있기 전에는 허락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일본 측은 이미 허락을 받았으니 가옥 건축이 불가하냐는 반문을 하고 강행하였다.³⁵⁾ 이때 당시 일본이 임시로 지은 가옥은 다음의 <지도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도 1> 『인천지도』 「인천부제물포도형」 (奎26233,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33) 『고종실록』 권15, 고종 15년 10월 5일(신사).

34) 『고종실록』 권16, 고종 16년 윤3월 13일(병술).

35) 『고종실록』 권16, 고종 16년 4월 30일(계유).

〈지도 1〉은 『인천부지도』 「인천부제물포도형」이다. 『인천부지도』는 1884년(고종 21) 제작된 것으로 총 3장의 지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물포 일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인천부제물포도형」, 「인천각국조계도」, 「제물포통상각국상민거류지약도」가 포함되어 있다. 그중 「인천부제물포도형」은 제물포의 남쪽에 간척으로 사라진 도서가 묘사되고, 일부 구역을 간척으로 표기한 것으로 보아 그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지도에는 각종 해로와 화도진, 화도진 소속의 포대 등이 그려져 있다. 또한 뒤에 언급될 조계지로 설정된 지역과, 각종 선박이 계류하는 기선정박처, 도로 계획인 작로처 등이 표기되어 있다. 일본인의 임시 가옥은 日人假家로 표기되어 있으며, 八穴砲臺의 옆에 소재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조선 정부는 이러한 내외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방비 축조를 계속하면서 인천 개항 불허 방침을 유지하였다.³⁶⁾ 1879년 7월 1일 마침내 인천, 부평의 포대와 진사가 준공되었다.

이와 같이 조선 정부는 19세기에 출몰하는 이양선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체계 재편을 시도하였다. 신현의 강화 해안 포대 정비와 건설, 신미양요를 거친 인천의 전략적 재인식, 운요호 사건으로 인한 인천부의 방영 승격과 조일수호조규 이후 일본의 개항 압박이 누적된 결과로 인천과 부평에 새로운 진영 설치라는 구체적인 방어체계가 갖추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36) 박광성, 앞의 논문, 339~340쪽.

3. 제물포 화도진 설치와 운영

가. 화도진의 설치와 운영

1879년(고종 16) 7월 1일 무위소가 인천, 부평 포대와 진사의 준역을 보고하자 고종은 다음과 같이 전교하였다.

(전략) 이 두 읍은 경기 연안의 중요한 지역이자 해문의 요충이다. 방비를 갖추어야 한다는 논의가 한두 번이 아니었음에도 아직까지 미처 시행하지 못하여 변경의 방비가 부족하였다. 이제 돈대를 쌓고 진을 설치하는 일이 완공되었다. 인천의 신설진은 화도진이라 하고, 부평의 신설진은 연희진이라 한다. 별장은 모두 무위소에서 자체적으로 선발하되, 다른 진과 현격히 다르므로 신중히 선발하고 자주 교체해서는 안 된다. 임기는 30개월로 정한다. (후략)³⁷⁾

해당 전교는 화도진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 화도진은 일반 진보와 달리 무위소가 별장을 자체적으로 단망하고, 낙점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는 화도진이 일반 지방 군현의 하위 기구가 아니라 무위소 직속 기구로 설치되었음을 의미한다. 둘째, 임기를 30개월로 규정한 것은 일반 외관직의 900일 임기와 같은 것으로, 화도진 별장이 수령에 준하는 위상을 가진 직임이었음을 보여준다.³⁸⁾ 셋째, 다른 진과 현격히 다르므로 신중히 선발하고 자주 교체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은 화도진이 개항 교섭이 한창이던 인천

37) 『고종실록』 권16, 고종 16년 7월 1일(계유); 『지극관청일기』, 고종 16년 7월 1일.

38) 『경국대전』, 吏典, 外官職

해역의 감시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같은 달 15일 도통사 민겸호는 화도진 별장 후보로 교련관 김홍신, 장만풍, 염지선을, 연희진 별장 후보로 지구관 김한정, 반경연, 김종완을 망단에 올렸다. 이 가운데 김홍신이 화도진 별장으로 낙점되었다.³⁹⁾ 7월 11일에는 공역을 감독한 전 강화유수 이경하와 전 어영대장 신정희의 품계를 올려주도록 명하였다.⁴⁰⁾

고종의 전교 이후 11월 15일에는 독진 지위 부여가 이루어졌다. 도통사 민겸호는 화도진과 연희진이 해문의 요충으로 다른 진과 현격히 다르므로, 각기 부근 1개 면을 이속하여 결북, 환상, 호적을 본진에서 직접 관할하는 독진으로 삼아 덕적 등 진의 예에 따르도록 건의하였다. 또한 영의정 이최응은 해문 방수는 다른 진과 달리 독진으로 삼는 것이 좋겠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고종은 즉각 윤허하였다.⁴¹⁾ 이로 인해 화도진은 단순한 군사 거점을 넘어, 독자적인 재정, 행정 관할권을 가진 진영이 되었다. 화도진의 운영을 위한 제반 사정이 갖추어졌고, 포대와 진영이 갖추어졌다.

화도진은 영종도와 마주보는 형세로 경강해로를 방어하기 위해 신설되었다. 따라서 화도진은 인천부 제물포 인근에 포대를 설치하고, 해안에 나타나는 이양선을 요망하거나, 군함의 경기만 일대 침범에 대응하였다. 이러한 화도진의 공간적 범위는 다음의 <지도 2>에 제시하는 「화도진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9) 『지구관청일기』, 고종 16년 7월 15일.

40) 『고종실록』 권16, 고종 16년 7월 11일(계미).

41) 『승정원일기』 2869책, 고종 16년 11월 15일; 『공거일록』 古4206-13.



〈지도 2〉 「화도진도」 (국립중앙도서관 소장-M古2-1999-37)

〈지도 2〉는 「화도진도」로 화도진을 비롯한 당시 인천부 제물포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화도진은 묘도, 북변포대(5칸), 남변포대(5칸), 북송곶 북변포대(3칸), 남변포대(5칸), 제물포 북변포대(8칸), 남변포대(5칸), 호구포대(2칸) 등 인천 연안의 여러 지점에 분산된 포대를 관할하였다.⁴²⁾ 화도진사 자체는 제물포에 소재하고 있지만, 소속 포대는 북으로 북송곶에서 남으로 호구포에 이르기까지 인천항 진입로 전역에 걸쳐 배치되어 있었다.⁴³⁾ 이는 화도진이 인천항을 둘러싼 해안선 전반에 걸쳐 감시망을 구축한 복합적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화도진은 초기 무위소 소속의 진영으로 설치되었으나, 1879년부터 1894년 혁파 이전까지 소속이 변화하였다. 소속 변화를 시기에 따라 구분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42) 인천직할시, 「화도·연희진의 설치와 중심성 축조」, 『인천시사』, 1994, 「화도진도」 수록 및 해제.

43) 박광성, 앞의 논문, 1991, 343쪽.

〈표 1〉 화도진 군영 소속 변천

시기	소속 군영	근거 사료
1879. 07	무위소	『고종실록』 권16, 고종 16년 7월 1일
1882.06.28	훈련도감	『승정원일기』 2901책, 고종 19년 6월 28일
1882.10.08.	금위영	『승정원일기』 2905책, 고종 19년 10월 8일
1882.10.22.	총융청	『승정원일기』 2905책, 고종 19년 10월 22일
1884.05.04.	친군전영	『승정원일기』 2923책, 고종 21년 5월 4일
1885.06.24.	친군좌영	『승정원일기』 2937책, 고종 22년 6월 24일
1894.09.11.	혁파	『관보』, 개국 503년 9월 12일

1879년 7월 신설된 화도진은 무위소 소속의 군영이었다. 그러나 1882년 임오군란이 발생하면서 군제개혁이 실시되었고, 같은 해 6월 훈련도감으로 이속되었다가, 훈련도감이 혁파되자 같은 해 10월 금위영을 거쳐 총융청으로 이속되었다.⁴⁴⁾ 이후 다시 한번 개편을 거쳐 친군전영으로 배속되었다가 1885년 6월 친군좌영에 소속되어 혁파되기 전까지 유지되었다.⁴⁵⁾ 한편, 화도진과 함께 1879년 설치되었던 연희진은 화도진이 훈련도감으로 이속된 1882년 혁파되었다. 이는 1882년 인천이 개항장으로 정해지면서, 부평 연안의 방비 필요성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된다.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소속이 바뀐 것은, 19세기 후반 중앙 군영이 정변과 개혁을 거치며 급격히 재편되고 있었던 사정과 맞물려 있다.⁴⁶⁾

화도진 별장은 앞서 전교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무위소 산하

44) 『승정원일기』 2901책, 고종 19년 6월 28일; 2905책, 고종 19년 10월 8일·10월 22일. 임오군란 이후 친군제 성립 과정에 대해서는 최병욱, 「임오군란 후 친군제의 성립과 그 모순」 참조.

45) 『승정원일기』 2923책, 고종 21년 5월 4일; 2937책, 고종 22년 6월 24일. 이 시기 군사제도 변천에 대해서는 차문섭, 「구한말 군사제도의 변천」 참조.

46) 박광성, 앞의 논문, 342쪽.

의 지구관, 교련관 가운데 선발된 인물들이 배치되었다. 그들의 공식적인 임기는 30개월로 이후 교대되었다. 현재 사료로 확인되는 별장직을 거친 인물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화도진 역대 별장

성명	재임시기	주요활동
金弘臣	1879년 7월 ~ 1880년대 초	1880년 11월 최초 외국 선박 포착 보고. 1884년 각국 조계 순포 경찰관 겸임. 사주 선박 적발 현장 지휘.
金淮炫	1880년대 후반 ~ 1894년	1888~1894년 경기관초 수록 함선 감시 보고 김옥균 시신 적간 시도(1894년 3월). 혁파 후 허매 혐의 재판 회부(1897년)

<표 2>는 화도진의 역대 별장을 기록한 것이다. 화도진의 존속 기간이 1879년부터 1894년까지라는 점과 당시 별장직의 임기가 30개월이었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4명의 별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사료에 나타나는 인물은 김홍신과 김형현 뿐이다.

화도진의 초대 별장인 김홍신은 1879년(고종 16) 도통사 민검호의 망단에서 낙점되었다. 김홍신은 1880년 11월 인천 연안 최초의 외국 선박 포착 보고를 올린 인물이다. 1884년 4월 각국 조계 순포 업무 경찰관으로 차하되어 인천 감리의 구관을 받는 등 1883년 인천 감리서의 설치와 더불어, 통상항 행정 참여가 본격화되는 시기까지 재임하였다.⁴⁷⁾ 같은 해 5월에는 야간 순찰 중 沙島 포구의 사주 선박을 적발하기도 하였다.⁴⁸⁾

다음으로 확인되는 인물은 김형현이다. 김형현은 1880년대 후반부터 1894년까지 화도진 별장으로 재임했다. 1890년(고종 27)

47) 『각사등록』, 고종 21년 4월 22일.

48) 『각사등록』, 고종 21년 5월 28일.

5월 사중에 기복하여 복직한 기록이 경기관찰사 첩정을 통해 확인된다. 김형현은 1888년부터 1894년까지 함선 감시 보고를 기록한 『경기관초』에 발신자로 나오는 인물이다. 그는 청, 일본, 미국, 영국, 러시아 함선 등의 입출항 동향을 하루 단위로 보고하였다. 1893년 8월에는 총세무사 柏卓安[J. McLeavy Brown]의 입항과 1894년 3월 김옥균 시신의 도착 사건, 같은 해 5월 오토리 게이스케[大鳥圭介] 전권공사와 일본군의 상륙을 보고하였다. 1894년 화도진이 혁파된 이후 재임 중 황무지가 된 둔답을 민간에 허매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다.

화도진의 병력 규모는 설치 초기에도 다른 진에 비해 많은 병력을 갖추고 있었다. 화도진 소속 인원은 278명으로, 같은 시기 연희진 174명, 용진진 210명보다 많아 3개 진 가운데 가장 큰 규모였다.⁴⁹⁾ 화도진은 별파진의 시방을 매년 1월, 2월, 9월, 10월 총 4번 설행하고, 우등 1인을 선발하여 直赴殿試 자격을 주는 것을 정식으로 삼았다.⁵⁰⁾ 같은 해 11월 9일에는 화도, 연희, 용진 세 진의 1년 포방 성적을 등급별로 시상하였다. 화도진은 1등 1명이 직부전시 자격을 얻었고, 2등 5명에게는 목 1필씩, 3등 11명에게는 포 1필씩 지급하였다.⁵¹⁾ 1880년 12월 화도진이 제조한 煮硝 105근이 납입되었다는 기록이 나타난다.⁵²⁾ 따라서 화도진은 화약의 원료가 되는 자초도 직접 제조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화도진의 설치 목적과 운영

화도진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인천 연안에 정박하는 외국 선박을 감시하고, 그 동향은 경기감영을 통해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49) 『지구관청일기』, 고종 17년 6월 19일.

50) 『지구관청일기』, 고종 17년 3월 28일.

51) 『지구관청일기』, 고종 17년 11월 9일.

52) 『지구관청일기』, 고종 17년 12월 11일.

에 보고하는 일이었다. 보고 계통은 화도진 별장→경기감영→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긴급한 경우 화도진 별장이 직접 첩보를 올리기도 했다.⁵³⁾

화도진이 외국 선박을 감시하고 보고한 최초의 사례는 1880년(고종 17) 11월 12일 화도진 별장 김홍신의 보고였다. 당시 화도진 별장 김홍신은 본진 요망군 이천만의 보고를 토대로, 삼범이양선 1척이 팔미도 외양에서 올라와 영종 경계 월미도 後洋에 정박하였음을 경기감사에게 알렸다.⁵⁴⁾ 개항 이후에는 이러한 감시·보고 임무가 화도진의 일상적인 업무가 되었다. 1880년부터 1888년까지의 기록은 확인이 어려우나, 1888년부터 1894년까지의 보고 현황은 『경기관초』에 나타나고 있다. 해당 기록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경기관초』의 외국 선박 정박 현황

국가	1888~1892	1893~1894	비율(%)	정박지
일본	2	26	43.8	월미도 후양, 해망대
영국	0	11	17.2	월미도 후양
청	4	5	14	월미도 후양
미국	2	5	12.5	월미도 후양
독일	0	3	4.7	월미도 후양
프랑스	0	2	3.1	월미도 후양
러시아	0	2	3.1	월미도 후양
오스트리아	0	1	1.6	월미도 후양
합계	8	56	100	

<표 3>은 『경기관초』에 기록된 외국 선박의 정박 현황을 표기한 것이다. 영국, 미국 등의 서구 열강과 일본, 청의 선박이 주로

53) 『각사등록 근대편』, 개국 503년 10월 26일.

54) 『경기관초』 奎18067, 첩정.

나타나고 있다. 정박지는 월미도 후양 또는 화도진 인근에 소재한 해망대로 나타난다. 대형 선박은 월미도 후양에 정박하였고, 일본의 소형 상선이 해망대에 정박하였다. 외국 선박의 국적과 정박횟수를 살펴보면 일본이 28회(43.8%), 영국이 11회(17.2%), 청이 9회(14%), 미국이 7회(12.5%) 정박하였다.

화도진의 함선 감시 기록은 1893년을 기점으로 급증하였으며, 영국, 독일, 러시아 등의 국가가 추가로 나타나고 있다. 가장 많이 정박한 국가는 일본으로 월미도 후양을 비롯해 인천항 일대의 해망대에도 직접 배를 정박하는 사례가 확인된다. 이는 일본이 다른 열강 세력과 비교하여 인천을 거점으로 확보해가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화도진은 각국 함선의 입출항 감시는 물론 외교관과 주요 인사의 동선을 파악하여 보고하였다. 1890년(고종 27) 9월 청국 칙사 일행이 입항하였을 때, 화도진이 이를 파악하여 보고함으로써 차비역관이 한양에서 파견되기도 하였다.⁵⁵⁾ 1892년(고종 29) 4월에는 청국 진해함을 타고 들어온 위안스카이가 인천에 하륙하여 곧바로 상경한다는 소식도 화도진을 통해 보고되었다.⁵⁶⁾

『경기관초』에 나타난 기록 중 일본의 군사행동도 파악된다. 1894년 조선 정부는 동학농민운동이 확산되자 임오군란 당시의 전례에 따라 청국에 원병을 요청하였다. 청국은 텐진조약에 따라 일본에 파병 사실을 통고하였고, 葉志超와 丁汝昌 휘하 병력 2,800명을 아산에 급파하였다.⁵⁷⁾ 일본은 청의 통고 이전부터 이미 파병을 결정한 상태였으며, 거류민과 공사관 보호를 명분으로

55) 『칙사일기』, 고종 27년 9월 24일.

56) 『경기관초』 奎18067, 고종 29년 4월 15일.

57) 청일 양국의 조선 파병 경위에 대해서는 최석완, 「일본정부와 청일전쟁 개전 과정 - 열강의 간섭과 일본의 교섭 무산 전략 -」, 『일본역사연구』 29, 일본사학회, 2009, 61쪽 참조.

혼성 제9여단 8,000여 명을 6월 9일부터 10일 사이 인천을 통해 한성에 진입시켰다.⁵⁸⁾ 동학농민군이 6월 11일 전주화약을 맺고 자진 해산하였음에도 청·일 양군은 조선에서 철수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6월 하순 청국과의 조기 무력 충돌을 결정하였으나, 러시아와 영국의 간섭에 부딪혀 실행을 보류하였다.⁵⁹⁾ 그러나 7월 10일을 전후로 열강의 간섭이 실질적인 제약으로 작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조성되자, 일본 정부는 다시 능동적 개전 방침으로 전환하였다. 조선 현지의 오토리 게이스케 공사는 그 이전부터 청군의 한성 진입 저지와 왕궁 점령 등 강경한 조치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요청한 인물이었다.⁶⁰⁾ 7월 19일 밤 참모총장은 오시마 요시마사 혼성여단장에게 대청 개전 명령을 발령하였다.⁶¹⁾ 7월 23일 오토리와 오시마는 경복궁을 무력 점거하고, 7월 25일 풍도 해전과 7월 29일 성환전투를 치르게 되었다.⁶²⁾

일본의 대규모 병력 상륙 기록은 7월 21일 吉野 외 14척의 입항과 육군 2,000명의 하륙으로, 개전 명령이 발령된 지 불과 2일 후에 일어난 사건이다.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1개월간 화도진이 기록한 병력은 병정 1만여 명, 모군 8,700명, 마필 8,100여 필, 대포 47좌에 달하였다. 이러한 수치는 거류민 보호라는 표면적 파병 명분과 실제 투입 규모 사이의 간극을 보여준다. 지속적인 병력의 하륙은 병참선의 확보가 긴요했다는 것을 보여준다.⁶³⁾ 화도진의 기록은 일본군이 조선을 발판으로 병참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을 함께 보여주는 자료이기도 하다. 또한 8월 13일에는

58) 최석완, 앞의 논문, 61쪽.

59) 최석완, 위의 논문, 64쪽.

60) 최석완, 위의 논문, 7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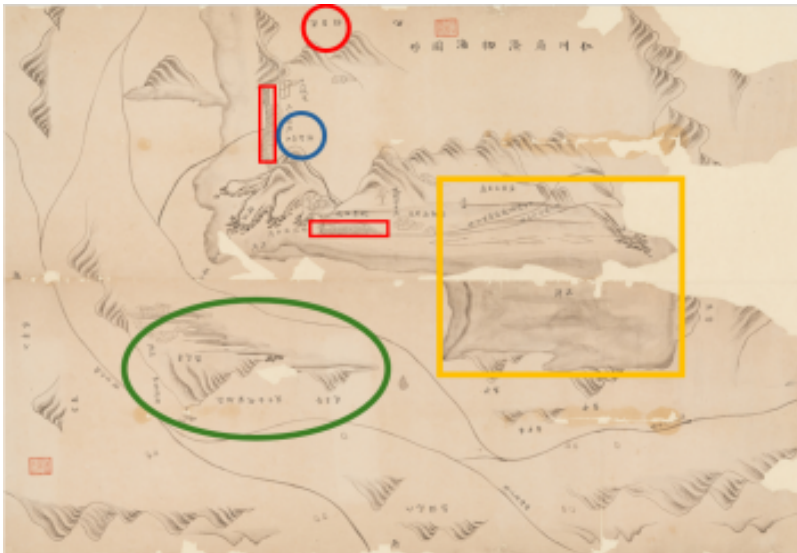
61) 최석완, 위의 논문, 95쪽.

62) 최석완, 위의 논문, 95~96쪽.

63) 김경록, 「한국학계의 청일전쟁 연구경향과 군사사적 검토」, 『강원사학』 35, 강원사학회, 2020, 106쪽.

텐류함[天龍艦] 편으로 입항한 야마가타 아리토모와 같은 고위 인사도 나타나고 있다.

이 시기 조선에 유입된 외국 군사력과 주요 인사는 인천을 거쳐 한성으로 이동하였다. 그 대상은 6월 초 최초 상륙한 혼성 9여단부터 7~8월 후속 병력, 야마가타 아리토모와 같은 고위 인사 등이다. 외국 함선은 월미도 후양, 인천항에 정박한 이후 한성으로 상경하는 형식을 보여준다. 특히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하륙, 상경 등의 표기는 이러한 이동이 정형화된 절차로 굳어졌음을 보여준다. 청군이 아산에 상륙한 것과 달리 일본군이 인천을 택한 것은 당시 인천이 한양으로 향하는 관문으로 이용된 것을 보여준다. 이 시기 인천 제물포의 모습은 다음의 <지도 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도 3> 『인천지도』, 「인천부제물포도형」,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奎26233)

<지도 3>은 <지도 1>과 동일한 지도이다. 해당 지도에 적색 원

으로 표기된 곳이 화도진이며, 적색 직사각형으로 표시된 곳이 포대의 위치이다. 청색으로 표기된 지역은 海望臺이며, 녹색 원으로 표기된 지역이 월미도이며, 녹색 정사각형으로 표시된 곳이 소월미도 일대이다. 황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추후 일본에 의해 간척된 조계지 일대를 표기한 것이다.

〈표 3〉에 나타나는 주요 선박의 정박지는 월미도 후양으로 기록되고 있다. 월미도 후양은 〈지도 3〉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해당 지도에는 ‘汽船留碇云云處’라고 기록되어 있다. 실제로 인천 앞바다가 간척되고 갑문이 생기기 전까지는 대형 선박이 직접 인천에 정박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선박은 월미도 후양에 정박하고, 연락선을 통해 인천 제물포로 들어왔다. 이후 일본에 의해 월미도를 왕래하는 기차가 생기고 나서야, 연락선을 이용하지 않고도 대형 선박이 월미도에서 이동할 수 있었다. 따라서 당시 각국의 선박은 지도에 표기된 지역에 군함을 정박하였을 것이다.

인천이 개항지로 선정됨에 따라, 화도진은 군사, 정보 기능뿐만 아니라, 개항장의 치안 유지에도 관여하였다. 주목할 점은 1883년 인천에 감리서가 설치되기 이전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1883년(고종 20) 3월 다소면 비랑리 거주민 하락서는 화도진 별장에게 소지를 올려 어장 경계 분쟁의 심판을 청원하였고, 화도진 별장은 제음을 달고 화도진별장인을 3개처에 날인하여 입지를 발급하였다.⁶⁴⁾ 이는 감리서 설치 이전부터 화도진 별장이 인근 민간 분쟁에 대한 행정 처리를 실시하고 있었고, 화도진에 소속된 지역에서 준지방관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883년 8월에는 「癸未海關監理設置事目」에 의해 花島鎮舍가 감리서의 공서로 지정되었다. 이로 인해 화도진의 치안 및 행정 기

64) 『경기관초』 奎18067, 다소면 비랑리 하락서 소지

능은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⁶⁵⁾ 이듬해 4월에는 화도진 별장이 각국 조계의 순포 업무를 위한 경찰관으로 차하되어 인천 감리의 구관을 받게 되었다.⁶⁶⁾ 같은 해 5월 화도진 별파진이 야간 순찰 중 사도 포구에 정박한 선박에서 사주의 정황을 포착하였는데, 현장에서 일본인이 칼을 빼들어 휘두르는 바람에 별파진원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화도진은 즉시 官隸를 발동하고 조선인 공범 2명을 체포하였으나, 도주하여 잡지 못하는 일도 있었다.⁶⁷⁾ 1886년 3월에는 화도진이 체포한 절도범 3명에 대해 형조가 대명률을 적용하여 처벌하기도 하였다.⁶⁸⁾

이외에도 화도진은 인천 일대를 지나는 전신선의 관리에도 관여하였다. 1886년 9월 통리아문은 電路 巡弁兵의 배치 인원을 확정하였다. 인천-한양간 구간에는 화도진도 포함되어 있었다. 화도진에는 순변 3명이 배정되었다.⁶⁹⁾ 1889년 4월 화도진은 전신주용 목재인 전목의 조달이 지연되어 신칙을 받았으며,⁷⁰⁾ 1891년에는 청 전보국의 전목 교체 독촉에 응하기 위해 인근 私養山의 목재를 청하기도 하는 등 전선 유지에 지속적인 행정 부담을 받고 있었다.⁷¹⁾ 해당 문제는 약 5년에 걸쳐 지속되다가 1894년 4월에 이르러서야 전 구간이 완비되었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재정 측면에서 화도진은 설치 초기부터 재정난에 시달렸다. 1887년 1월 친군좌영은 화도진 별장의 보고를 인용하여, 제반 거행이 극히 복잡하고 번거로운데 매번 궁핍하여 마련하기 어렵다는

65) 『각사등록』, 고종 20년 8월.

66) 『각사등록』, 고종 21년 4월 22일.

67) 『각사등록』, 고종 21년 5월 28일.

68) 『승정원일기』 2946책, 고종 23년 3월 19일.

69) 『경기관초』 奎18067, 고종 23년 9월 14일.

70) 『경기관초』 奎18067, 고종 26년 4월 21일.

71) 『경기관초』 奎18067, 고종 28년 4월 20일·21일; 6월 4일.

사정을 전하며 운영 절목을 마련해줄 것을 청하였다.⁷²⁾ 같은 해 9월 해방영의 포랑미 13석을 순변병의 구량으로 영구히 획급하는 방안이 확정되었고,⁷³⁾ 11월에는 인천 감리서의 세입 연 7,200원 가운데 매년 1,200원을 구획하는 방안이 의정부에서 건의되었다.⁷⁴⁾

화도진의 재정 기능은 진영 운영 비용 조달에 그치지 않았다. 1887년 1월 내부가 인천 감리서에 보낸 문서에서는 육영공원 외국인 교사의 월봉을 화도진장이 총세무사 메릴에게 송치하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었다. 감리서의 문서에서는 화도진장이 1886년 11월 분 봉급은 본진이 관장하는 牛皮價銀으로 총세무사에게 발교하여 육영공원 교사에게 전부 하였으나, 12월분은 우피가은의 청산, 감부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급하지 못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⁷⁵⁾ 화도진이 개항장에서 거래되는 물품 판매 대금을 관장하고, 이를 근대 교육 기관의 운영 재원에 활용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화도진은 1879년 설치된 이래 군제 개혁에서 다양한 군영의 소속 진으로 운영되어 왔다. 초기에 설정한 별장의 임기는 30개월로 수령에 준하는 근무 일수를 채워야 했다. 화도진의 설치 목적은 초기에는 해방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인천이 개항지로 선정됨에 따라 다양한 업무를 관장하게 되었다. 특히 1883년 인천 감리서가 화도진사를 공사로 쓰게 되면서 감리서의 업무와 화도진의 업무가 충돌하는 사례도 발견되었다.

72) 『승정원일기』, 고종 24년 1월 7일.

73) 『각사등록』, 고종 24년 9월 13일.

74) 『승정원일기』 2967책, 고종 24년 11월 25일.

75) 『육영공원등록』 奎3374, 정해 1월 16일

4. 인천 監理署의 부설과 화도진 혁파

인천 감리서의 설치는 1883년 1월 1일 인천이 정식으로 개항되면서 이루어졌다.⁷⁶⁾ 조선 정부는 인천항의 통상 사무를 전담할 기구로 감리서를 설치하였는데, 별도의 청사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항구 인근에 자리하고 있던 화도진사를 초기 공서로 사용하게 되었다. 그 결과 화도진사라는 하나의 공간에 군사 지휘 기능과 외교·통상 행정 기능이 공존하는 구조가 형성되었다. 이후 감리서는 별도의 청사를 마련하여 이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공서 지정은 단순한 초기의 청사 공유에 그치지 않았다.

감리서가 설치된 이후 화도진의 행정적 역할은 확대되었다. 1884년(고종 21) 4월 화도진 별장 김홍신이 각국 조계의 순포 업무를 위한 경찰관으로 차하되어 인천 감리의 구관을 받게 된 것이었다.⁷⁷⁾ 같은 해 7월에는 동래부의 填補銀 27,440냥이 화도진에 보관되었다.⁷⁸⁾ 이는 화도진이 인천항을 거치는 공금의 보관 장소로 활용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1885년 5월에는 화도진에 유치되어 있던 동전 1만 냥이 인천 감리에게 이속되었다.⁷⁹⁾ 군사 진영으로 신설된 화도진이 통상항의 재정·치안 행정을 담당하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던 것이다.

화도진은 1879년 11월 독진의 지위를 부여받아 호적, 결세 등을 독자적으로 관할하고 있었다. 감리서가 설치된 이후에도 화도진은

76) 『각사등록』, 계미 해관 감리 사목, 고종 20년 8월.

77) 『각사등록』, 고종 21년 4월 22일.

78) 『각사등록』, 고종 21년 7월 12일.

79) 『각사등록』, 고종 22년 5월 17일.

항내 상민에 대한 과세와 사송 처리 관행을 유지하고자 했다. 따라서 감리서와 화도진의 갈등이 발생했다. 특히 1890년부터 1894년까지 반복적으로 발생하였는데, 그 구체적 상황은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 화도진·감리서 관할 분쟁 사례

연월일	분쟁	각 관서의 주장	결과
1890. 11	항내 상민 과세, 사송	감리서 : 항내 거류 조계 상민의 납세 소송은 모두 감리서의 소관으로 화도진장의 처리 권한은 없다고 주장	시정 요구
1891. 03		화도진 : 항민의 호역, 결역 수납은 구례, 권한을 잃으면 無民鎭將이 될 위험성 주장	상위 기관 내용 전달
1891.09		감리서 : 개항 이래 수백 호가 감리서에서 印契를 발급 받음. 화도진의 관할 주장은 근거가 없음. 개항 전 입적민만 화도진의 관할로 인정	통리아문 보고 이중 구조로 확정
1892.윤6	화도진 경내 타살 사건	화도진 : 본항 사송은 감리아문의 귀속이므로 사건 조사 및 검사를 진행하지 않음 감리서 : 화도진 경내 발생 사건으로 진장이 즉시 검시할 일	처리 지연
1894.09	화도진, 안산 일대 일본군 屯寨 허가	감리서 : 일의 사무가 중하여 감리가 독단적으로 허가할 수 없음. 외부아문에 가부에 대한 내용 요청	조건부 허가
1894.09	화도진 존치 여부	감리서 : 감리, 경무관이 있으므로 진장 존치는 무의미	화도진 혁파

<표 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화도진과 감리서의 갈등은 크게 세 가지로 전개되었다. 첫째는 항내 상민에 대한 과세, 사송 관할권, 둘째는 사건 발생 시 검시, 심판 주체, 셋째는 외국 군대의 주둔 허가권 등이었다.

첫 번째 쟁점이 표면화된 것은 1890년(고종 27) 11월 9일이었

다. 감리서는 향내 거류 조계 상민의 납세, 소송은 모두 감리 소관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화도진장이 향내 상민의 가옥, 과세, 소송을 처리하는 것은 규정과 맞지 않다고 하였다.⁸⁰⁾ 이에 화도진은 이듬해 3월 장위영에 보고를 올려, 향민의 호역, 결역은 해당진에서 수납하는 것이 본래 설치될 때의 구례이며, 다른 읍과 진에서도 통용되는 예라고 반박하였다. 또한 이러한 권한을 잃는다면 무민진장이 되어 보존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였다.⁸¹⁾

그러나 같은 해 9월 감리서는 개항 이래 수백 호가 본서로부터 계를 받았으니, 누가 화도진에 속하고자 하겠냐며 화도진장의 주장을 반박하고, 장위영에 화도진장이 이를 전직할 것을 요청하였다.⁸²⁾ 감리서의 첩정 원문에는 개항 전 화도진에 입적한 백성은 구례에 따라 화도진장이 관할하더라도, 외국인과 관계되는 사안은 모두 감리서에 호소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개항 이래 수백 호가 이미 감리서로부터 계를 발급받았으니, 화도진의 관할 주장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었다. 해당 문서를 살펴보면 개항 전 입적민은 화도진에서 관할하고, 개항 후 신규 상민은 감리서에서 관할하는 이중 구조가 제물포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쟁점은 1892년(고종 29) 윤6월에 발생했다. 해당 사건은 화도진 소속 군졸이 전처를 살해한 것이었다. 화도진장은 그 검시 책임을 두고 본향의 소송은 모두 감리아문에 귀속되어 처리되는 것이므로 심단할 의사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감리서는 사건이 화도진의 경내에서 발생하였으니, 화도진장이 처리해야 한다고 반박하였다.

80) 『각사등록』, 고종 27년 11월 9일.

81) 『각사등록』·장위영 내문, 고종 28년 3월 6일.

82) 「인천감리 성 첩정(통 제147호)」, 고종 28년 9월 3일.

세 번째 쟁점은 1894년 9월 일본 대리영사가 일본 병력이 상륙하였는데, 조계가 협소하여 그 외부인 화도진이나 안산 등지를 택하여 둔채를 설치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해당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이미 화도진의 헐파가 사실상 진행되고 있던 시기였다. 따라서 감리서는 관계가 매우 중하여 독단적인 허가가 어려움을 밝히고 외무아문에 재결을 요청했다. 외무아문은 민전답을 침범하지 않는 조건으로 허가하였다.⁸³⁾

각 관청의 분쟁은 1894년(고종 31) 화도진 헐파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이어졌다. 갑오개혁이 본격화된 같은 해 9월 11일, 군국기무처는 의회, 정부 분리, 승선원 이속 등 여러 조항과 함께 다음과 같은 의안을 의결하였다.

화도진은 원래 경영에서 해방을 살피기 위하여 설치한 것이다. 그 땅이 이미 통상구안에 속하여 감리와 경무관을 두었으니, 진장을 그대로 두는 것은 실로 무의하다. 마땅히 즉시 헐파하여야 한다. 地段과 인구는 해당 지방관에게 환속하고, 소유한 비행인 미 1,500석 · 조 80석 · 은 1,200원은 탁지아문으로 하여금 장부를 자세히 조사하여 다시는 지출하지 말게 하며, 관청 건물과 군물은 장위영으로 하여금 접수 · 관리하게 한다.⁸⁴⁾

이 의안은 이를 뒤 관보를 통해 정식으로 공포되었다. 화도진과 감리서 간의 관할권 분쟁이, 화도진 존치 근거 자체를 무너뜨리는 논리로 귀결된 것이다. 이러한 헐파 논리는 갑오개혁기 군제 개편의 흐름과도 맞물려 있었다. 1894년 갑오개혁으로 군제가 전면 개편되어 중앙에는 친위 · 시위연대가 설치되고 지방에는 진위연대

83) 「인천감리 박 첩정」, 개국 503년 9월 7일.

84) 『고종실록』 권32, 고종 31년 9월 11일. 화도진 헐파 조항은 의회 · 정부 분리, 승선원 이속, 중죄 법사 재판 원칙 등 여러 개혁 조항 가운데 하나로 처리되었음이 확인된다.

가 설치됨에 따라, 화도진과 같이 특정 지역의 해안 방어만을 목적으로 한 소규모 진영은 자연히 그 존립 기반을 상실하게 되었다.⁸⁵⁾

화도진 혁파가 결정된 이후의 처리 과정도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9월 13일 전환국에는 화도진의 진사와 군물, 둔토 등을 성책해서 교부하라는 관문이 발송되었다.⁸⁶⁾ 같은 달 21일 전환국의 실사 결과, 미 1,500석은 아직 획래되지 않았고, 조 80석에 해당하는 각처 둔답의 수확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한편 세은 1,200원은 해관에서 받아 사용되었는데, 9월까지의 용하 금액이 당오전을 기준으로 33,663냥에 달하여 오히려 1,268냥의 초과 지출이 발생한 사실이 나타났다. 군물 가운데 조총과 환도는 이미 포군들에게 분급되어 각처에 흩어져 있어 수거 작업이 진행되었다.⁸⁷⁾

이처럼 화도진의 혁파는 단순히 관청 하나를 없애는 행정적 절차에 그치지 않고, 둔토, 군물, 건물, 미수곡 등 다양한 형태의 자산을 조사하고 처리해야 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세은 사용분의 초과 지출, 진사 건물의 매수자 부재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9월 29일에는 화도진사의 시가를 조사한 결과 매수 희망자가 없어 확정하기 어려우며, 인천항의 사례로 보아 당오 1만냥을 넘지 않을 것이라는 보고가 올라왔다. 이에 진사 건물 매각은 보류하고, 우선 밭을 만한 사람을 택하여 관리하도록 조치하였다.⁸⁸⁾ 10월 26일에는 화도진 둔전답 추수 성책이 보고되었는데, 정조 50석은 전 화도진 첨사의 廩料로 획급되고 나머지는 처분을 기다리도록 하였다.⁸⁹⁾ 같은 해 11월에는 화도진 소속 포대 수직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護商兵隊所 건물 칸수를 조사하고, 관리

85) 남달우, 「화도진(花島鎭)에 대해 다시 알아야 할 것들」, 『황해문화』 7, 1995, 344쪽.

86) 『각사등록 근대편』, 개국 503년 9월 13일.

87) 『각사등록 근대편』, 개국 503년 9월 21일.

88) 『각사등록 근대편』, 개국 503년 9월 29일.

89) 『각사등록 근대편』, 개국 503년 10월 26일.

자를 지정하는 조치가 이루어졌다.⁹⁰⁾

1894년 화도진이 혁파된 이후에도 옛 둔토와 가옥을 둘러싼 분쟁이 지속되었다. 1895년 1월 전환국은 화도진의 둔곡 가운데 진장의 요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본국에 적치하도록 지시하였다.⁹¹⁾ 또한 같은 해 5월 인천 거주민 정제교가 자신의 집터 수도가 화도진 둔답과 겹쳐 있다는 이유로 교환을 청원하여 허가받기도 하였다.⁹²⁾ 1896년(건양 원년) 9월, 10월 두 차례 훈령을 통해 화도진 둔은 궁내부 소관으로 최종 분류되었다. 이로써 화도진의 둔토는 갑오개혁 직후의 정리기를 지나 대한제국 황실 관할로 편입되었다. 그러나 화도진의 토지 문제는 지속되었다. 1897년 3월 별장 김형현이 재임 중 황무지가 된 둔답을 민간에 허대한 사실이 문제가 되어 재판에 회부되는 사건⁹³⁾이 발생하거나, 1901년에는屯租영수표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였다.⁹⁴⁾

1905년(광무 9)에는 화도진사 24칸을 정동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무단으로 훼손하려는 사건이 발생하여 외부에서 조치를 하였으며,⁹⁵⁾ 화도진 부지에 거주하고자 하는 조선인의 청원도 불허되었다. 같은 해 11월에는 일본 군용지로 편입되어 거주지를 잃은 인천 주민 90여 호가 화도진 동편에 거주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나 이도 역시 불허되었다.⁹⁶⁾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화도진과 감리서의 관계는 1883년 公署 지정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단순한 행정적 공존을 넘어 1890년대에는 관할 분쟁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해당 사례는 화도진의

90) 『각사등록 근대편』, 개국 503년 11월 27일.

91) 『각사등록 근대편』, 개국 504년 1월 5일.

92) 『각사등록 근대편』, 개국 504년 5월 22일.

93) 『각사등록』, 건양 2년 3월 18일.

94) 『각사등록』, 광무 5년 7월 10일.

95) 『각사등록』, 광무 9년 1월.

96) 『각사등록』, 광무 9년 4월 4일·11월.

전통적 독진 권한과 개항 이후 확대되는 통상 행정 권한이 충돌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각 관청의 분쟁은 1879년 설치 당시 부여된 권한과 1883년 감리서의 설치 이후 확대되는 과정에서 화도진이 그 기능을 잃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결국 1894년 군국기무처 의안에서 감리와 경무관이 있으니, 진장을 그대로 두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주장이 이루어지며 화도진은 혁파되었다. 그러나 화도진의 군물, 토지, 둔전 등의 자산 처리는 1905년까지 이어졌다.

5. 맺음말

본고는 1879년부터 1894년까지 존속한 인천 화도진의 설치 경위와 운영 실태, 혁파 이후 자산 처리 과정을 관찬 사료에 수록된 구체적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화도진은 1868년부터 시작된 이양선 출몰에 대한 임시방편적 대응을 극복하기 위해 신설된 진영이었다. 조선 정부는 1866년 병인양요 이후 신현의 강화 해안 포대 건설, 1871년 신미양요 이후 인천의 전략적 위상 재인식, 1875년 운요호 사건으로 인한 인천부의 방어영 승격, 1879년 일본의 인천 개항 압박 등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이다. 설치 초기에는 감시, 해로 방어 등 군사적 기능이 주로 이루어졌다면, 1883년 인천 개항을 중심으로 다양한 임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즉 화도진은 외교관의 동향을 살피거나, 조선의 관문으로 이용되었다. 더하여 감리서의 공서로 지정됨에 따라 다양한 행정 수요에 복합적으로 대응하는 공간으로도 사용되었다.

화도진장과 감리가 같은 공간에 배치된 것은 단순한 행정적 공존은 아니었다. 화도진이 1879년 독진으로 설치되면서 부여받은

포괄적 관할권과, 인천이 통상항으로 성장하면서 확대되어 가는 감리서의 행정 권한 사이의 구조적 모순은, 1890년부터 1892년에 걸쳐 과세·사송·검시를 둘러싼 반복적 갈등으로 표출되었다. 1891년 화도진 별장이 표명하였던 무민진장의 우려는, 1894년 군국기무처 혁파 의안에서 감리와 경무관이 있으니 진장을 그대로 두는 것은 무의하다는 논리로 그대로 귀결되었다. 화도진이 자신의 존립 근거를 지키려 거듭 주장하였던 논리가 역설적으로 그 존립을 부정하는 근거로 되돌아온 것이었다. 혁파는 법적으로는 1894년 9월에 완료되었으나, 그 둔토와 부지를 둘러싼 분쟁은 1905년 이후까지 이어졌다.

본고는 기존 연구가 충분히 다루지 못하였던 화도진의 구체적 운영 사례와 감리서와의 마찰 양상을 실증함으로써, 개항기 인천 지역 행정·군사 체계의 복합적 성격을 일면이나마 드러내고자 하였다. 다만 화도진 혁파 이후 1905년까지의 자산 처리의 후속 양상이나, 동시기 다른 개항장 진보와의 비교 검토는 진행하지 못하였다. 추후 연구를 통해 이를 보완하고자 한다.

〈부표 1〉 화도진의 외국 함선 감시 보고 상황(1880~1894)

시기	함선명	국적	종류	동향	비고
80.11.12	미상	미상	三帆異樣船	월미도 후양 정박	최초 보고
88.02.05	湄雲	청	二帆兵船	월미도 후양 정박	
89.01.09	阿嘛哈	미국	三帆兵船	월미도 후양 정박	청국 鎮海艦과 동시 입항
89.01.09	鎮海	청	二帆兵船	월미도 후양 정박	
90.07.01	長海	일본	兵船	월미도 후양 정박	
90.09.01	湯遠	청	兵船	외양 직출	
90.09.02	阿馬海	미국	兵船	외양 직출	
92.04.13	磨耶艦	일본	二帆兵船	월미도 후양 정박	
92.04.14	鎮海	청	二帆兵船	월미도 후양 정박	袁世凱 하륙, 상경
93.02.24	미상	청	二帆兵船	월미도 후양 정박	
93.03.01	미상	영국	二帆兵船	월미도 후양 정박	
93.03.04	미상	미국	三帆兵船	월미도 후양 정박	청국 二帆兵船 외양 동시 직출
93.04.05	미상	영국	三帆兵船	월미도 후양 정박	
93.04.24	미상	미국	三帆兵船	월미도 후양 정박	
93.04.24	미상	러시아	二帆兵船	월미도 후양 정박	
93.06.08	馬離安	미국	三帆兵船	월미도 후양 정박	千代田, 松島와 동시 입항
93.06.08	千代田	일본	三帆兵船	월미도 후양 정박	
93.06.08	松島	일본	一帆兵船	월미도 후양 정박	

93.07.18.	玄海丸	일본	二帆船	해망대 앞 정박	미국 대리공사 安連 입항
93.08.17.	飛虎	청	三帆船	월미도 후양 정박	총세무사 柏卓安 입항
93.08.25.	衣釐士必	오스트리아	二帆船	월미도 후양 정박	
93.09.11	烏老夫	독일	三帆船	월미도 후양 정박	
93.09.23.	阿來克里得	영국	三帆船	월미도 후양 정박	
93.09.26.	卜貝司	영국	三帆船	월미도 후양 정박	
94.02.26.	大島艦	일본	三帆船	팔미도 외양 포방 연습	1893년 12월 24일 입항
94.03.05.	威靖	청	二帆船	월미도 후양 정박	김옥균 시신 운반 별장 적간 시도
94.03.10.	伊勢丸	일본	商船	해망대 앞 정박	서리 署理欽差駐劄日本辦理大臣 俞箕煥 입항
94.04.03.	肥後丸	일본	二帆船	외양 직출	일본공사 오토 게이스케 출거
94.05.06.	操江	일본	三帆船	월미도 후양 정박	
94.05.06.	八重山 외 5척	일본	兵船	월미도 후양 정박	오토리 게이스케 입항
94.05.07.	미상	청	一帆船	월미도 후양 정박	
94.05.09.	高雄	일본	二帆船	월미도 후양 정박	일본군 1,042명 하륙
94.05.09.	媽口駕厘	영국	三帆船	월미도 후양 정박	
94.06.22.	威遠 외 2척	청·일	兵船	월미도 후양 정박	
94.07.03.	미상	영국	兵船	월미도 입항	
94.07.03.	鬱浦	독일	三帆船	입항	
94.07.04.	恩道地 외 2척	영국	三帆船	입항	미국 수사 제독 裨理滿 입항

94.07.21.	吉野 외 14척	일본	兵船 商船	월미도 입항	육군 2,000명, 募軍 2,500명, 馬 5,000필 하륙
94.07.22	武藏 외 2척	일본	商船	입항, 하륙	육군 2,600명, 募軍 2,000명, 馬 350필, 大砲 15좌 하륙
94.07.22	赤城艦	일본	二帆兵船	외양 직출	마야함 동시 직출
94.07.22	多摩川 丸	일본	二帆商船	입항	사이온지 긴모치[西園寺公望] · 다나가 겐자부로[田中建三郎] 하륙, 영사관 체류
94.07.29.	筑紫船	일본	二帆兵船	월미도 정박	사이온지 긴모치[西園寺公望] 일행 정양선 타고 경강으로 출발
94.07.29.	勢王 외 2척	영국 미국	三帆 · 二帆兵船	월미도 후양 정박	미국 수사 제독 裴理萬 입항
94.07.30.	鳥海艦	일본	二帆兵船	입항	영국, 미국 병선 직출
94.08.02	加露里 恩	영국	三帆兵船	월미도 정박	
94.08.02	某邦加 施	미국	二帆兵船	입항	미국 동양수사 제독 西介内搨 입항
94.08.04.	미상	미국	兵船	외양 직출	西介内搨 출항
94.08.07.	미상 3척	일본	兵船	입항	兵丁 200명, 馬 31필 하륙
94.08.09.	比求末	영국	三帆兵船	외양직출	良遠 동시 입항
94.08.10.	海門艦	일본	三帆兵船	월미도 후양 정박	八重山 동시 입항
94.08.11.	薩摩丸 · 玉川 丸	일본	商船	입항	兵丁 240명, 馬兵 135명, 馬 135필, 募軍 50명, 大砲 8좌, 砲彈 90계 하륙 兵丁 200명 상경

94.08.13.	天龍艦 외 9척	일본 프랑스	兵船· 商船	입항	아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 입항. 兵丁 960명·募軍 30명·馬兵 350명·馬 350필·大砲 6좌·砲彈 300계·彈丸 230계 하륙
94.08.15.	島海艦	일본	二帆兵船	월미도 후양 정박	兵丁 3,600명·募軍 1,385명·馬兵 785명·馬 785필·大砲 18좌·砲彈 314계·彈丸 330계 하륙
94.08.16.	玉川丸 ·北辰 丸	일본	商船	월미도 후양 정박	
94.08.17.	大和艦 외 6척	일본	兵船	외양 직출	兵丁 80명·募軍 986명·馬兵 596명·馬 596필·彈丸 540계 하륙 상경
94.08.18.	新瀉丸	일본	三帆商船	입항	법·일 병선 동시 직출. 兵丁 315명·募軍 415명·馬兵 129명·馬 405필 하륙 상경
94.08.19.	미상	러시아 프랑스	兵船	외양 직출	영·일 병선 입항. 兵丁 25명·募軍 880명·兵馬 각 70 하륙 상경
94.08.21.	미상	프랑스 일본	兵船	입출항	兵丁 315명·募軍 415명·馬兵 129명·馬 405필 하륙 상경
94.08.22.	미상	영국 일본	兵船· 商船	입출항	兵丁 246명·募軍 57명·馬 44필 하륙 상경

〈참고문헌〉

1. 사료

『고종실록』, 『승정원일기』, 『비변사등록』, 『일성록』, 『지구관청일기』
『각사등록』, 『각사등록 근대편』, 『왜사일기』, 『척사일기』,
『공거일록』(古4206-13), 『경기관초』(奎18067-v.1-6),
『育英公院謄錄』(奎3374), 『官報』, 『使和記略』
인천감리 성(成) 첩정(통 제147호), 고종 28년 9월 3일
인천감리 박(朴) 첩정, 개국 503년 9월 7일
경기관찰사 첩정, 광서 16년(1890) 5월 25일
다소면 비랑리 하락서 소지, 계미 3월

2. 단행본

육군군사연구소, 『한국군사사7 : 조선후기1』, 경인문화사, 2012.
육군군사연구소, 『한국군사사8 : 조선후기2』, 경인문화사, 2012.
인천직할시, 『인천시사』, 인천직할시, 1994.
최성연, 『개항과 양관역정』, 경기문화사, 1959.

3. 논문

강석화, 「신미양요와 강화도 방어체계의 변화」, 『기전문화연구』 39-2, 기전문화연구소, 2018.
김경록, 「한국학계의 청일전쟁 연구경향과 군사사적 검토」, 『강원사학』 35, 강원사학회, 2020.
노영구, 「신현의 국방론과 해안 포대 건설」, 『문헌과 해석』 48, 태학사, 2009.
남달우, 「화도진(花島鎭)에 대해 다시 알아야 할 것들」, 『황해문화』 7, 새얼문화재단, 1995.
민장원, 「19세기 해방책의 전개와 서해안 방어체제의 재편」, 고려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2025.

- 박광성, 「인천개항과 연안방비책에 대하여」, 『기전문화연구』 11, 기전문화연구소, 1991.
- 박진홍, 「청일전쟁기 조일 간의 군사 관계 - 양호도순무영의 설치 과정과 조선군 지휘 권한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근현대사연구』 79, 한국근현대사학회, 2016.
- 안와순, 「동학농민전쟁과 청일전쟁」, 『동방학』 42,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20.
- 연갑수, 「병인양요와 흥선대원군 정권의 대응 - 「순무영등록」을 중심으로」, 『군사』 3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997.
- _____, 「병인양요 이후 수도권 방비의 강화」, 『서울학연구』 8,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1997.
- 차문섭, 「구한말 군사제도의 변천」, 『군사』 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982.
- 최병옥, 「임오군란 후 친군제의 성립과 그 모순」, 『군사』 2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993.
- 최석완, 「일본정부와 청일전쟁 개전과정 - 열강의 간섭과 일본의 교섭 무산 전략」, 『일본역사연구』 29, 일본사학회, 2009.

〈Abstract〉

The Reinforcement of the Coastal Defense System in Gyeonggi Bay and the Establishment of Hwadojin during the Late 19th Century

Hong, Min-yoo

This study examines the establishment, operation, and dissolution of Hwadojin, a coastal defense garrison in Incheon that existed from 1879 to 1894. While previous research has focused primarily on the institutional background and organizational changes of Hwadojin, the actual operational aspects have remained largely unexplored due to limitations in available sources. This study draws on official records such as the Jigugwancheong Ilgi (지구관청일기), Gaksadeungnok (각사등록), and Gyeonggi Gwancho (경기관초) to reconstruct the day-to-day functioning of the garrison.

Hwadojin was established in 1879 at Jemulpo, Incheon, in response to the recurring appearance of foreign vessels along the coast and mounting pressure from Japan following the Treaty of Ganghwa. In its early phase, the garrison's primary role was coastal surveillance and defense against foreign ships. After the opening of the port of Incheon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Office of the Commissioner (Gamniseo) in 1883, however, Hwadojin's responsibilities expanded to include monitoring the movements of foreign vessels, maintaining order in the treaty port, and managing telegraph

lines. At the same time, the taxation and judicial authority Hwadojin had held as an independent garrison (dokjin) increasingly conflicted with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of the Gamniseo, giving rise to repeated jurisdictional disputes throughout the 1890s. These disputes were ultimately turned into the very justification for abolishing the garrison: in 1894, during the Gabo Reforms, the Deliberative Council on Military Affairs (Gungukgimucheo) ordered Hwadojin's dissolution on the grounds that its continued existence was meaningless once a commissioner and police officers had already been appointed. Even after its formal abolition, disputes over its land and property continued until 1905.

By empirically documenting the operational realities of Hwadojin and its friction with the Gamniseo, this study illuminates the process by which a coastal garrison in a treaty port was transformed from a purely military outpost into a site of overlapping administrative, fiscal, and security functions during the port-opening period.

Key Words : Hwadojin, Jemulpo, Port-Opening Period, Foreign Ships, West Coast, Gyeonggi Bay, Gamniseo

원고투고일 : 2026.07.09. 심사수정일 : 2026.08.26. 게재확정일 : 2026.09.09.